

2024년 드론 도시관리 실증 지원사업(대기환경)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인천광역시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드론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2024년 드론 도시관리 실증 지원사업」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수요 매칭형 드론 서비스 실증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과제 발굴 및 상용화 유도

□ 추진내용

- (추진내용) 도시관리를 위한 드론 서비스 지원(지정과제)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드론 및 부품 개발·제조·서비스 중소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 공고일 기준 인천 내 본사·지사·기업 연구소 소재 기업
 -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은 1개로 제한하며 주관기업이 전체 과업과 예산의 50%를 초과해야 함

□ 지원내용

- 드론 도시관리 실증 지원(지정과제) : 대기환경 모니터링

□ 지원분야

- 지정과제(재공고)
 - 과제: 드론 활용 대기환경 모니터링
 - 대상: 서구 왕길동(사월마을) 약 0.32km²
 - ※ 세부 요구조건은 붙임파일(제안요구서) 참조

□ 지원규모

- (총예산) 총 70,000천원 이내
 - ※ 사업비 제안,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조건) 총 사업비 80% 이내 시비 지원/ 민간부담금 2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 계상 가능

구분	시비	민간부담금	비고
중소기업 (주관)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

□ 기타 유의사항

구분	내용
결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업 소유 ※ 주관기업은 인천시 요구(전시회, 발표회 등)에 따른 유형적(시제품), 무형적 결과물 활용에 적극 협력해야 함.
사업종료 이후 제출 및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 비행로그기록지, 비행일지, 비행데이터 • 실증 수행 관련 고해상도 영상, 사진 데이터 • 사업비 회계정산자료, 정산보고서(정산기준은 첨부된 규정 참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식별장치 부착 필수(추후 공지)

□ 추진절차

추진단계	주요내용	일정
1 사업공고	• 참여기업 모집	5.21.~6.3.
↓		
2 접수서류 검토	• 참여기업 신청서 서류 검토	6.4~6.5.
↓		
3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 선정 및 지원금 결정	6.7.~6.10.
↓		
4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ITP ↔ 지원기업) 및 지원금 지급	6.13~6.20
↓		
5 사업수행	• 사업수행(지원기업) ※ 주간보고 제출 필수	협약일~ 10.31
↓		
6 현장점검	• 중간 현장점검	8월 중
↓		
7 결과보고	• 결과평가 및 최종보고, 정산	11.11~11.15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1	사업계획서	○	
2	사업비 집행계획서	○	
3	평가위원회 발표자료 ※10분 내외 발표	○	
4	<서식1>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5	<서식2>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6	<서식3>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7	<서식4> 청렴 서약서	○	
8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	
11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	
12	법인등기부등본		○
13	가점항목 증빙서류 - 가점 증빙 자료는 접수마감일 까지 확정되어 유효한 자료만 인정		○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3

신청자격

- (참여기업)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드론 관련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은 사업공고일 기준 인천시 본사*·지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본사, 지사)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참여기관) 지역 내외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 (공통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책임자, 참여 연구원 등은 아래 사항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 조회
 - 이미 개발된 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 개발목표 등의 인터넷 공시

4

지원제외 대상

- (중복지원) 해당연도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은 동일 아이템으로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중복과제) 기지원된 내용과 중복·유사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부도,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업(법원 회생인가 기업 제외),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기업
 -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완전 자본잠식
 - ※ 단,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제외

-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책임자 소속) 공고일 현재 참여기업 책임자가 사업 신청 기관소속이 아닌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 (허위 및 거짓)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4. 5. 21.(화) ~ 2024. 6. 3.(월) 18:00
- 접수방법 : 인천 R&D관리시스템 접수(<https://irds.itp.or.kr>)

6

추진계획 및 평가기준

- (선정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필요성, 실현 가능성, 전략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지원과제 확정)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수행 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기업 역량 (40)	사업 수행 능력	○ 수행 인력 및 장비	15
	사업 실적 등 경험	○ 관련 사업 경험 여부 및 실적 유무	15
	드론운용 및 안전관리	○ 사업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계획의 적정성 (60)	기관 수요 충족	○ 기관 목적·취지 부합 여부	20
	목표의 명확성	○ 기관별 요구,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20
	추진전략의 적정성	○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사전준비성	20
계			100

7

가점 제도 적용

- 가점부여 조건(최대 3점)
 - 인천시 우수기업 인증(유망중소, 비전,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3점
 - 인천시 항공 및 드론 선도기업 지정 : 3점

8

사업 관련 문의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사업 관련 내용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센터 이선영 전임연구원	032-260-0857 sylee@itp.or.kr